

사료관리법 고시 주요 개정사항



김 동 환
본회 사료기술연구소 차장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료업계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료지 제68호(5·6월호)로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일부 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이 소개된 바 있고, 제69호(7·8월호)에서는 “사료관리법 하위고시 개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대용유배합사료업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 중 대용유 사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사항이 기고되었다. 본고에서는 앞의 두 기고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개정내용 중 사료업계의 구매 및 품질관리 실무 담당자들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1. 고시 개정일 및 시행일

2014년 4월 29일자로 개정 고시된 사료관리법 고시는 다음과 같다.

○ 사료공정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4호-45호)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 제2014-46호)
- 사료검사요령 (" 제2014-47호)
- 사후관리요령 (" 제2014-48호)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2014-49호)

위 5개 고시의 개정일은 모두 같지만 부칙에 따른 시행일, 서식 및 경과조치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시개정으로 상당수 사료의 명칭과 구분이 바뀌었으며 이로 인한 용기 포장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사료검사요령 및 사후관리요령 별지 서식의 경우 7월 31일까지 기존 서식과 병용할 수 있었지만 본 고가 발간된 시점에는 이미 새로운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료협회에서 접수하거나 통보하는 수입사료 검정 결과 서등 관련 서식은 개정된 서식으로 통보되고 있다.

고시명	시행일	경과조치
사료공정서	2014년 6월 1일	-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종전규정 따름 - 종전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는 시행일 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2015년 5월 31일까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2014년 5월 1일	-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종전규정 따름
사료검사요령	2014년 5월 1일 (수입신고면제 및 수입신고대상품목 적용은 2014년 11월 1일)	-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종전규정 따름 - 2014년 7월 31일까지 서식 병용
사후관리요령	2014년 5월 1일	-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종전규정 따름 - 2014년 7월 31일까지 서식 병용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014년 5월 1일	-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종전규정 따름

이번 개정으로 수입하는 모든 사료를 수입신고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자가제조용 원료의 경우 수입사료검정을 통해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년 11월 1일 이후에 적용된다.

2. 수입신고 품목 확대 및 수입사료검정 완화

기존 수입신고 대상 사료의 품목은 “세관장요건확인품목”, “안전성 및 품질검정” 및 “광우병(BSE)관련 서류검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세관장요건확인품목은 안정성 등 검정이나 BSE관련 서류검정 품목 중 관세청과 연계되어 통관 전에 신고필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며 이번 개정에도 BSE 관련 서류검정이 일부 신설된 것이 있긴 하지만 기존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부분은 안전성 및 품질검정 칸을 삭제하고 별표 앞부분에 “1. 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와 “2.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를 신설한 것이다. 이 조항 신설로 사료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은 관세청에 수입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수입사료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사료관련단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사료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료검사요령 제24조(수입사료 검정)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료관련단체가 세관장 요건확인품목이 아닌 품목 중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 품목확대와 면제조항 적용은 앞서 기술한대로 고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 사료검사요령 [별표 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 제2항 관련)

〈 개정 전 〉

〈 개정 후 〉

〈신설〉		→	1. 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세관장 요건확인품 목	검정구분 안전성 및 품질검정		2.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
	광우병(BSE) 관련 서류검정		세관장요건확인품목
			BSE 관련 서류검정

인 2014년 11월 1일 이후 적용되며,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상위규정인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다.

사료검사요령 제25조(정밀검정 대상 사료) 1항에서 “알팔파”와 “애완용 동물 사료”를 삭제하고,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 검사관련 3항에서도 애완동물 동물 사료는 해당년도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만 적용하는 등 수입사료검정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특히 “수입사료 검정결과서”를 수입신고서와 유사하게 서식을 개정하고 검정결과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설정하여 매년 정밀검정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 외에는 연간 1회 이상 검정을 하면 수입신고서 제출 및 신고필증 교부만으로 수입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사료검정기관을 기존의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하였고, 사료검사요령 별표2 사료별 현물검사검정성분 항목에 안전성 등 관련 항목을 강화하여 검정횟수는 줄어들지만 관리항목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되었다.

수입사료 검정의뢰서와 검정결과서는 수입신고서상 신고내용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정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입법된다면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사료검정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정밀검정, 무작위검정 등을 정하여 수입신고처리를 하게 될 예정이다.

○ 고시개정에 따른 사료수입신고 및 수입사료검정

사료의 구분		수입신고	서류 검정	정밀 검정	무작위검정 및 최초검정
세관장요건확인품목	정밀검정대상	○	○	○	
	정밀검정대상 이외	○	○		○
세관장요건확인품목 이외의 사료	정밀검정대상	○ (자가제조용은 면제가능)	○	○	
	정밀검정대상 이외	○ (자가제조용은 면제가능)	○		○

3. 사료검사 및 재검정

고시개정으로 사료검사요령 제22조(사료의 재검사)를 중심으로 사료검사체계가 변경되었다. 우선 시, 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던 시료의 경우 기존에 3점을 채취하였으나 개정 고시규정에 따라 2점을 채취하게 된다.

재검사를 위한 요건으로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시도에서는 시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동물용 사료의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1점 송부하고 나머지 1점만 기존처럼 자체 보관

하게 된다.

재검사를 위한 이의 제기에 사료검정인정기관의 분석결과가 첨부하도록 한 단계를 생략하므로써 검정인정기관에 별도의 시료를 계속 보관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사료검사 및 검정기관의 신뢰를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로 보여진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거치는 단계가 생략되면서 사료의 재검사를 위한 요건은 사료검사요령 제22조 3항 1호부터 8호에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서 각 호의 조건에 맞아야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각호의 조건 중에서도 등

○ 사료의 재검사 신청 요건

구분	등록 성분 및 수분	안전 성분 분	재검사 신청조건	재검사 시료	재검정 결과
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	X	시료채취 과정을 확인하여 도 구, 요령 및 송부 등의 방법에 위반 근거 확보	재채취	1개 (추가시료 결과)
2.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공정서 제8조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	○	분석법등 확인을 통해 사료표준 분석방법(사료공정서 별표5)에 위반 근거 확보	시·도 보관시료	2개 (당초, 추가시료)
3. 사료공정서 제8조에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	○	○	사료표준분석법에 2개 이상의 방법이 설정된 경우 수거된 시료와 같은 시료를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방법 간의 차이 확인	시·도 보관시료	2개 (당초, 추가시료)
4.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	○	사료검사요령 별표4 "사료검정 성분 허용오차 적용범위" 허용 오차 2배 이내 확인	시·도 보관시료	2개 (당초, 추가시료)
5. 검사대상 사료의 전부를 판매·공급하기 전인 경우에는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을 한 경우(일부라도 판매·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	판매전 사료로서 함량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열처리 등 재가공	재채취	1개 (추가시료 결과)
6.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	○	X	수거된 시료와 같은 시료를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검정결과 차이 확인	시·도 보관시료	2개 (당초, 추가시료)

특성분이나 안전성 성분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었다.

사료의 재검사를 위한 조건은 6가지 경우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료채취 단계부터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확인해야하고 별도의 시료도 보관하여 필요시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으로 “사료검정기관은 재검정을 실시할 때 수검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정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에 보관되어 있던 추가시료를 재검정 할 경우에는 당초시료와 추가된 시료를 동시에 검정해서 통보하도록 하여 사료검정기관에서도 분석결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만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개정으로 수입사료검정에도 재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검사는 국내산 사료와 마찬가지로 사료검사요령 “제22조제3항부터 8항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료의 재검정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국내산 사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4. 기타 주요 개정 사항 및 공문시행 내용

〈기타 고시 주요 내용〉

- 사료공정서에서 대용유배합사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당, 유장 및 유조제품 등을 낙농가공부산물로 새로 분류하였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서도 BSE와 관련하여 금지하는 품목에서 우유·산양유 및 낙농가공부산물은 제외하여 유조제품이 배합사료 및 사료용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 양어사료를 수산동물사료로 바꾸는 등 사료공정서 별표 1, 2에 명칭과 용어를 정리.
- 수산동물사료의 경우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료종류와 배합비율, 원료의 명칭등을 표시하도록 수산과학원의 의견을 수용.
- 혼합성 단미사료와 혼합성 보조사료를 신설하였고, 부형제 사용범위를 3종류로 확대하는 등 사료원료를 다양하게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공정의 설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하여 다양한 품목을 신속하게 사료공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셀레늄을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서 삭제하고 사료중 특정성분의 함량제한기준으로 신설하여 기준을 완화.
- 수산동물사료의 경우 카드뮴을 유해사료기준에서 등록성분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
- 관리대상 방사능의 허용기준을 설정.
- 기존 고시에 설정하지 않은 것도 잠정

적으로 CODEX 및 선진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작성 배부하여 사료관리법 고시 등의 적용 및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공문시행 내용〉

-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한 농약중독증 발생으로 벧짚의 잔류농약(포레이트) 잠정 허용기준을 0.05ppm으로 설정.(2014.5.13)
-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비테 인염산염을 축산과학원 원료인정심의

를 통해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인정물질로 추가.(2014.6.19)

-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4년 6월 1일 이후로 생산된 사료의 성분등록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2014.5.28 1차, 7.31 2차)
 - 산란계, 오리, 수산동물사료 등 명칭변경
 - 등록성분 추가(오리 : 메치오닌,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 카드뮴)
 - 수분함량 변경(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등) 